

##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간제근로자(의산 왕궁리 고증) 신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기간제근로자(의산 왕궁리 고증연구, 특별연구원 나급, 연구원 서무)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4일  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

### □ 최종합격자 명단

- 특별연구원 나급(고고) : 고증 고고-01 복○○
- 연구원 서무 : 고증 서무-01 최○○

### 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

1. 최종합격자는 채용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일시/장소 : 2024. 3. 11.(월) /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 
나. 제출서류

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      **\*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**

(※ 불임 1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,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

- 기본증명서(상세)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일반 채용신체검사서(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로 대체 가능)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(※불임 1 서식 작성)
- 결격사유 확인서 1부 (※불임 2 서식 작성)
-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- 반명함 사진 1매(JPG)
- 기타서류(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)

## 2. 유의사항

- 가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채용담당자 (☎ 041-830-567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합격통보 후에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, 신체적·정신적 결함, 성 범죄 관련 (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포함)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한 경우 및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다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
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
2. 결격사유 확인서 1부. 끝.

## 붙 임 1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표 등·초본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) 번호: \_\_\_\_\_ - \_\_\_\_\_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-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 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대상자      본인

성        명: 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:

전화번호:

## 불 임 2

### 결격사유 확인서

○ 성      명:

○ 생년월일:

본인은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. . .

확인자: (인)
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귀하